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의료법 제9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별표2]의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

만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료법 개정('20.12.29.)에 따라, 하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3. 주요내용

-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32조제1항제3의2호)
-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별표2 과목)
-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체”를 “매체 및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2제1항”을 “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조사·분석”을 “보고, 조사·분석”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으로, “제출한”을 “보고 또는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행위 파목의 법 제92조제2항제2호의 200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파목1) 및 파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2)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200	200

별표 2 제2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6호	경고	15	30
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2	50	75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 ----- ----- ----- <u>매체 및 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u> ----- ----- -----

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 공하는 행위 가. ~ 마. (생 략) 4. ~ 7. (생 략) 제42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u>법 제45조의2제1 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분 석</u>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 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 ⑦ (생 략)	----- -----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제42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u>법 제45조의2제1 항 및 제2항</u>----- ----- <u>보고, 조사 · 분석</u>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402